

노인학대 신고기관



1577-1389



보건복지부 129

신고 요령

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
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
(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제1항)

신고 방법

전화:1577-1389
온라인:서신,홈페이지
주요내용:학대상황 및 의심자 인적사항

신고자 권리

신고자의 이름,전화번호 등과 같은
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한다
(노인복지법 제 36조의 6)